

종 법(宗法)

교육위원회법

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해 중단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.

제2조 교육위원회는 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 계획 분석 검토 심의한다.

제3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